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15
----------	------

2025년 2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2월 3일 이병도 의원
- 회부일자 : 2025년 2월 6일
- 상정일자 :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2월 25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이병도 의원)

1. 제안이유

- 디지털기기 사용 보편화 및 정보통신·인공지능(AI) 기술 발달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와 그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실질적 수행 주체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디지털성

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명시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 또한, 현행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촬영물 등을 지칭하는 용어가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디지털 성착취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등으로 혼용되고 있어, 이를 상위법인 「성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용하는 ‘불법촬영물등’으로 통일하여 규정함으로써 용어 사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해석과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 ‘불법촬영물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2호)
- 2) 각 조문에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촬영물 등을 지칭하는 ‘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불법촬영물등’으로 수정함.(안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및 제7조제1호 등)
- 3)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함.(안 제9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고,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실질적 수행 주체인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됨.

2 주요사항 검토

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용어 정비(안 제2조)

- 안 제2조는 ‘디지털 성범죄’를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디지털 성범죄에서 사용되는 불법촬영물등’의 범위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법령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불법촬영물등’ 으로 통일하여 규정하고자 함임.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 <u>디지털성범죄</u> ”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u>디지털성범죄</u> ”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u>불법촬영물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u> 나. <u>불법촬영물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u>

현행	개정안
	<p>반하여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p> <p>다.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p>
<p>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p> <p>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유포·소지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p> <p>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p>	<p>2. “불법촬영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말한다.</p> <p>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p> <p>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p> <p>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p> <p><삭 제></p> <p><삭 제></p>

(1) 디지털 성범죄 유형 규정

- 안 제2호제1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2조21)의 ‘디지털 성범죄’를 규정한 조항을 준용하여 ▶ 불법 촬영 및 허위영상물 제작·편집·가공·합성 ▶ 불법 촬영물 유포·협박·소지·구입·저장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중략)

명확히 하고 있으며 ▶사이버공간 내 성적 괴롭힘 유형으로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음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 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10조, 제311조 참고

- 현행 법³⁾상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을 불법촬영, 합성물의 제작·유포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나 시청 등의 행위도 형사처분 대상이며 피해자를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바,
- 동 개정안이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법적 보호조치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2) 조례 용어 정비

- 현행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관련한 용어를 ‘디지털 성착취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으로 혼용되고 있고, 상위법과 다른 용어로 명시되어 있어 법적 해석 및 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음.
- 이에 안 제2조제2호는 상위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제7조3 각 목에 따라 법문의 표현을 ‘불법촬영물등’으로 통일하여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 및 사법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여 피해 대응을 신속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제처(2022) 의견 또한 상위법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법 집행과정에서 용어해석의 차이로 인해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해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2, 제14조3, 제22조2, 제22조3, 제22조4)

석상의 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령 상호간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해석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⁴⁾

- 따라서 동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개념의 명확화와 용어 정비를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 및 법률간 정합성을 유지하고, 행정·사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현행 조례 제2조제3호와 제2조제4호는 각각 안 제2조제2호다목과 안 제2조제1호다목에 반영된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정비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임.

4) 법제처(2022). 자치법규길라잡이. 90p.

나.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업무 규정 신설 (안 제9조2항)

- 동 조례안은 법 제7조4의5)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지역센터”)’ 조항을 근거로 지역센터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교육, 홍보 및 피해 실태 조사, 연구까지 종합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 조치로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p>제9조(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9조(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① -- <u>디지털성범죄</u> ----- ----- -----.</p> <p>② 제1항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u>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u></p> <p>2. <u>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u></p> <p>3. <u>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u></p>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 (중략)

③ 시·도지사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

※ 입법예고 중 : 본조항 신설 2024.10.16.(시행일 2025. 4. 17)

현 행	개 정 안
	<p>4. 불법촬영물등 유포 모니터링 및 재유포 방지</p> <p>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사·법률·심리상담·의료 등 지원</p> <p>6. 디지털성범죄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p> <p>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p>

- 상위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중심으로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음.⁶⁾
- 한편 동 개정안의 업무 범위는 동 법 제7조의4의 규정된 업무범위를 포함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피해자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2.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3.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4.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5. 불법촬영물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6.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③ 시·도지사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
2.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3.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대응 방안 마련과 피해 예방을 위한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구체적으로 ▶유포 모니터링 및 재유포 방지 ▶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 수사·법률·심리상담·의료 등 지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사 및 연구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 뿐 아니라 피해확산 방지, 피해자 지원 강화, 범죄 예방에 대한 통계구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이는 서울시가 이미 동 조례 제정에 따라⁷⁾ 2022년 3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이하 “센터”)를 개관하여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부터 피해자 사후관리까지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⁸⁾을 도입하여 별도의 신고 없이도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선제적으로 운영 중에 있음
- 특히 센터는 동 조례 제7조⁹⁾에 따라 시장이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7)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7조(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8136호, 2021. 9. 30., 제정]

8)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인공지능(AI)기술은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한 번 클릭만으로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피해 영상물을 즉시 찾아내고 키워드 입력부터 영상물 검출까지 불과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기존 1~2시간이 소요됐던 것에 비해 검출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정확도도 200% 이상 향상됨.(서울시 보도자료. 2023.3.30.)

9)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제7조(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자 자조 모임 지원
5.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7.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지원 등과 같이 서울시 차원의 피해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사업수행을 하고 있는바, 조례 상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음.

<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일반현황 >

- 설립목적: 디지털성범죄 피해시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없는 안전한 서울 조성
- 설립근거
 -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2022. 9. 30.)
 -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위·수탁 협약(2022. 2. 8.)
- 주요기능
 - 피해지원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치료 지원 및 연계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사·법률지원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일상회복지원
 - 사업
 -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 그 밖에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다. 부서 의견

- 집행부서인 양성평등담당관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로 그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령상의 용어를 통일하여 해석과 적용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3 종합 의견

- 동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용어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촬영물등’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해석과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개정이 가능함.
-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법률의 내용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415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이병도, 강석주, 김 경, 김동욱,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김춘곤,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송재혁, 오금란, 왕정순, 유정인, 이상욱, 이상훈,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임규호, 임종국, 정준호, 최민규, 한 신,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33명)

1. 제안이유

- 디지털기기 사용 보편화 및 정보통신·인공지능(AI) 기술 발달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와 그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실질적 수행 주체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명시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 또한, 현행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촬영물 등을 지칭하는 용어가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디지털 성착취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등으로 혼용되고 있어, 이를 상위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용하는 '불법촬영물등'으로 통일하여 규정함으로써 용어 사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해석과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법촬영물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나. 각 조문에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촬영물 등을 지칭하는 ‘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불법촬영물등’으로 수정함.(안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호 등)

다.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함.(안 제9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불법촬영물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 나. 불법촬영물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
 - 다.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불법촬영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말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
 - 합성물 · 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제3조제1항 중 “디지털 성착취물 등과 신상정보(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불법촬영물등”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을 “불법촬영물등”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디지털 성범죄”를 “디지털성범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 · 상담 및 사후관리
2. 불법촬영물등 · 신상정보 삭제 지원
3. 불법촬영물등 · 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 · 홍보
4. 불법촬영물등 유포 모니터링 및 재유포 방지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사 · 법률 · 심리상담 · 의료 등 지원
6. 디지털성범죄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관한 조사 · 연구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u>이 조례에서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u></p> <p>1. <u>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u></p> <p>2. <u>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u></p>	<p>제2조(정의) <u>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1. <u>“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u></p> <p style="padding-left: 2em;"><u>가. 불법촬영물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u></p> <p style="padding-left: 2em;"><u>나. 불법촬영물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협박·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u></p> <p style="padding-left: 2em;"><u>다.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u></p> <p>2. <u>“불법촬영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말한다.</u></p>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유포·소지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

<삭 제>

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삭 제>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착취물 등과 신상정보(디지털 성착취물 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

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
수·상담 및 사후관리
2.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
제 지원
3.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
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
육·홍보
4. 불법촬영물등 유포 모니터링
및 재유포 방지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사·
법률·심리상담·의료 등 지원
6. 디지털성범죄와 디지털성범
죄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
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업무

제12조(사무의 위탁) (현행 제1항
과 같음)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명시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한 것으로 비용발생의 여지가 있어 각종 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확인결과 기추진사업¹⁾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또한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불법촬영물등'으로 통일하여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수반요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기추진사업] 2025년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1,678,000천원

○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운영비용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금액은 1,462,000천원임

- 디지털성범죄 피해시민 윈스톱 통합지원 강화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8종 밀착 지원

·지지도반 4종(상담·삭제·수사·동행지원), 일상회복지원 4종(법률·의료·전문심리상담·타기관연계)

- AI 기술고도화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조기발견·삭제지원

-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을 위한 국내외 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자료 : 2025년 서울시 여성가족실 예산설명서 및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